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본문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